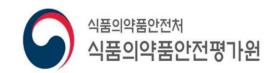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방안

2019. 11. 20.(수)









# 목 차

- I 허가(인증) 신청서 기재사항
- ш 버전 기재 방법에 대한 주요내용
- □ 후향적 임상시험 방법에 대한 주요내용



# I. 허가(인증) 신청서 기재 사항

#### 제9조(모양 및 구조)

- 제9조(모양 및 구조) 모양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적 원리를 이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가. 모양·구조 및 각 부분의 기능
  - 나. 소프트웨어의 구조 및 주요기능

#### 제10조[원재료]

- 제10조(원재료) 원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 2.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기재한다.
  - 사.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규격 또는 특성 란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하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3. 소프트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 란을 각각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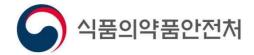
일련번호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및 운영환경	비고

### 제13조[사용방법]

- 제13조(사용방법)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 3.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사진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①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8. 성능에 관한 자료
  - 가.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의 적합성확인보고서와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 버전 기재 방법에 대한 주요내용

### 추진배경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및 버전 관리 현황

- ✓ 소프트웨어는 안전성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 진행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 버전으로 허가·관리
- ✓ 안전성 확보와 관계없는 버전 업데이트의 경우, 최신 버전으로 허가 관리 하면 <u>기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제품</u>은 허가 사항과 달라 **제조·수입·판매 및 기 판매된 제품의 수리 어려움 발생**
-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유효성 확인 자료 제출로 선제적 대응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확보(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등)와 제품 특성을 고려한 임상시험 기준, 자료 요건 마련 필요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버전 기재 방법

✓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수정, 삭제 및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경 됨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목적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소프트웨어를 식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버전 관리**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함**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원재료)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하고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운영 환경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버전 기재

방법

✓ 소프트웨어 버전 기재 시, 제조자의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결함 제거 등의 버전 표시는 'X' 로 기재 가능함

예시) **버전**: 3.02.X 또는 3.02.1

예시) 독립형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체계

시스템 제어부

1.00, 23

LCD 모듈

1.00.3.3

- ·주요 변경:의료기기의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 ·주요 변경이 아닌 변경: 화면 색, 메뉴 위치 등 의료기기의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5.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방법 참고]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 복수 기재 대상은 <u>Negative 방식</u> 적용 :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재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소프트 웨어 버전의 복수 기재가 가능

#### 버전 복수 기재 대상 (원칙)



▶ 대상 의료기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의료기기 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에 의거, 회수 보고를 한 경우

#### 첨부자료



- ▶ 신규 추가된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시 (기허가 이력이 없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
-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보고서
- > 기 허가된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시, - 허가증 변경 이력 또는 변경이력표 제출

#### 버전 복수 기재 방법



> V1.02.X, V1.03.X

### 버전 복수 기재 주요내용



# **>** 원재료 항목의 '복수 기재 대상' 관련 내용

#### V.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방법

- 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작성방법
- ✓ 문구 추가
  - (반영내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의료기기 법」제31조 제2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회수 보고 대상 소프트웨어 버전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가 가능하다.
  - ☞ (반영내용)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버전별로 구조 및 주요기능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버전 별로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 버전 복수 기재 주요내용



# 😂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에 대한 첨부자료

#### VI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첨부자료

- 3.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에 대한 첨부자료 요구사항
- ✓ 기허가 받은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첨부자료 관련 내용 및 변경 이력 예시 수정
  - ☞ (반영 내용) 허가(인증)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러 개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방식 동일) ~ 다만, 기허가(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버전을 복수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허 가 받은 소프트웨어 버전의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허가증(인증서)의 변경 이력 페 이지를 제출하거나, 표 5와 같은 변경 이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표5. 기허가 받은 소프트웨어 버전 복수 기재 제출 자료인 변경 이력 예시>

No.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된 소프트웨어 버전
1	2018.03.16.	B 기능 추가에 의한 소프트웨어 버전 번경	1.1.0
2	2019.04.15	에너지 세기 조사범위 변경	2.0.1



# 피. 후향적 임상시험 방법에 대한 주요내용

# 임상적 유효성 확인 방법

1 전향적 임상시험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미리 설정한 후 일정기간 동안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법으로 위험요소가 일으키는 변화를 관찰하는 임상시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의 3. 용어의 정의 참고]

2 후향적 임상시험

연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피험자 모집 대신 이전의 진료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 획득된 피험자의 의료 데이터(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신호, 병리검사, 유전정보 등의 표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시험 [전향적 임상시험보다 임상시험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의 3. 용어의 정의 참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형태 중 독립형 소프트웨어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임상적 유효성 확인 방법으로 후향적 임상시험이 적용되고 있음

# 후향적 임상시험 자료 적용 가능



# 😂 후향적 임상시험자료 적용 관련 내용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후향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임상시험 자료도 적용

(기존) 전향적 임상시험자료 → (개선) 전향적 또는 후향적 임상시험자료

-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17)
-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2017)

# 감사합니다.



[부패·공익신고 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코너



